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2017. 11. 3] 조례 제774호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 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9. 10. 4 조례 제 882호
전부개정 2021. 11. 19 조례 제 99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2. 11. 18 조례 제1059호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나이 개정 및 「정부조작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5. 11. 14 조례 제12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증평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정책 시행계획)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를 위한 통합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증평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이하 “인구정책”이라 한다)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구변동 추이 및 원인 분석
3. 인구정책의 추진 결과 평가 및 분석
4. 인구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구증가를 위한 기업, 기관, 단체와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증평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1.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인구정책의 협의
3. 인구정책의 발굴 및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미래기획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미래전략과장, 보건소장, 읍·면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 가.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나. 인구정책 및 출산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 다. 교육기관 공무원
 - 라.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

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전입장려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입자 또는 인구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지원금 또는 기념품 등(이하 “전입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입 지원금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통요건: 지원 신청일 기준 전입자(제2호마목의 경우 기업체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전입세대

나. 군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다. 군 소재 군부대(다른 지역에 있는 예하부대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군인등”이라 한다)

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군 소재 기업체(협력업체를 포함한다) 및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이하 “기업체 근로자”라 한다)

마. 군에 전입신고를 한 임직원이 2명 이상 있는 관내 기업체(이하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라 한다)

③ 전입 장려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시책별 세부지원 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8, 2025. 11. 14>

1. 전입세대: 가구원 1인당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10만원 및 그 밖에 군 관리 시설 이용 할인권 등 군수가 정하는 혜택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2. 다음 각 목의 전입자에게 개인당 20만원 이내의 전입 지원금 지급. 다만, 전입 지원금은 전입한 때 한 번만 지급하며, 대상별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대학생

나. 군인등

다. 기업체 근로자

3.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 별표의 전입 임직원 수에 따른 지원금. 다만, 지원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④ 전입 지원금은 「증평사랑으로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종이형 또는 카드형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전입 지원금등 지원 신청 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삭제 <2022. 11. 18>

제12조(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생활안정 및 출산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혼인 신고한 날부터 7년 이내일 것

2.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일 것

③ 대출이자 지원은 최대 5년간 연 최대 150만원 이내로 한다.

④ 대출이자 지원 세부조건, 신청 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청년 월세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월세 자금(이하 “월세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8, 2023. 7. 28>

1.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일 것

2. 1인 가구로 무주택일 것

3.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일 것

③ 월세 지원금은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2년간 연 최대 12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1. 14>

④ 월세 지원금 지원 세부조건, 신청 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1. 14]

제13조의2(다자녀 가구 지원) ① 군수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생활용품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요건,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13조의3(출산 가구 지원) ① 군수는 출산 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가구에게 지원금, 기념품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요건,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14조(지원 제외)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지원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10조에 따른 전입 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후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고 2년 후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3.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5조(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에게 제14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을 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제16조(인구정책 교육 · 행사 등) 군수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해 인
구정책 관련 교육,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 등에 참여 또는 수상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 · 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
함)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부칙(2021. 11. 19 조례 제99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증평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증평군 인구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증평군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증평군 인
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무직근로자 등에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2호다목의 공무직근
로자와 라목의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군에 전입신고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2022. 11. 18 조례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장려 지원 사업 적용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전입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1. 14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세대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25. 11. 14>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10조 관련)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입세대 지원	군에 전입신고한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축하금(1인 10만원) 또는 상당의 기념품)- 관내시설 이용쿠폰(세대원 당 1매, 세대별 최대 2매 지급) <p>※ 쿠폰 사용이 협의된 시설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p>
전입지원금 지급	군 소재 대학교 재학생 군 소재 군부대 직업군인,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관내 기업체(해당기업의 협력업체 포함) 및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내 기업체 근무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만원 상당 증평사랑드림상품권 (지류 또는 카드형 충전) 지급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 지원	기업체 소속 전입 임직원이 2명 이상 있는 관내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명 ~ 5명: 200,000원- 6명 이상: 1명당 50,000원 추가 지급 <p>※ 제10조제2항라목의 요건을 갖춘 전입 근로자 수대로 지급</p>